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24 선고 2022가단254351(본소), 2024가단204497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손해배상 등 청구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4. 12. 12 선고 2024나13225(본소), 2024나13232(반소) 판결
인천지방법원 2024. 4. 24 선고 2022가단254351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길

피고(반소원고)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태, 전영진

변론 종결2024. 3. 20.

판결 선고2024. 4. 24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252,847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8. 30.부터 2024. 4. 24.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는 원고(반소피고)의 각 부담으로 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 한다)에게 278,654,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. 1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%,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328,28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1. 10. 18.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다세대 주택 6동 총 26세대의 창호공사(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)를 공사대금 569,800,000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(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 매월 말일 기성집계 후 1일에서 15일 사이에 기성금을 지급하며, 공사계약의 해지 시에는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도록 약정하였다.

나. 이 사건 공사의 창호는 AW(고정창)을 포함하여 시공되었고, 현재 기성율은 61.55%이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316,847,000원이다.

다.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1. 11. 26. 44,000,000원, 2021. 12. 31. 20,000,000원 합계 64,000,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호증, 갑제2호증, 갑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피고의 기성금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뜻을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,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,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인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성고에 상응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252,847,000원(계산 : 316,847,000원 - 64,000,000원)이 된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 이익률을 10%로 하여 이를 위 316,847,000원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반소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, 이 사건 공사가 원래 계약한 창호인 PW(미서기 이중창)으로 공사되지 아니하였고 AW(고정창)으로 되어 있어 이는 철거 후 재시공 되어야 하는 것인 바, 원고는 피고에게 고정창 등 철거비 19,776,000원과 재시공비 308,505,000원 합계 328,281,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를 고려하면, 원고의 기성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갑제1호증, 갑제3호증, 갑제4호증,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감정축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계약서에 따른 창호는 AW1)로 기재되고 형식은 미기재 상태였으나 최초 도면상으로는 PW2) (형식 미서기 - 이중창)으로 표시되어 있던 사실, 원고는 고정창으로 변경 되는 부분을 표시한 변경 도면을 가지고 있는 사실, 현재 시공되어 있는 고정창은 동일 재질의 AW(미서기)창으로 변경 시공할 수 없고, 창을 통한 이사를 가능하게 하려면 전체 철거 후 PW미서기(이중창)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는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와 위 각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원, 피고가 모두 날인한 견적서(갑제2호증)에는 품명란에 비록 그 형식이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AW를 의미하는 '창호공사(알루미늄 시스템 창호)'로 기재되어 있고 방충망도 여닫이 방식의 시스템 창에 사용되는 롤스크린 방충망을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, 알루미늄 창호를 공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견적이 산출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정해지고 공사계약서와의 간인까지 날인된 점,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독촉받기 전까지 창호의 변경 시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는 점, 이 사건 공사는 총

26세대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창호 공사이고 일부 창호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유리가 장착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창호 공사는 원, 피고의 합의에 따라 AW(고정창)을 포함한 현재의 창호로 시공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설치된 창호가 모두 창문을 통한 이사 짐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이를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위 고정창이 설치된 주방 창문을 통한 이사 짐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를 곧바로 창호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.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론

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2,847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. 8. 30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. 4. 24.까지 상법 소정의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공사 중단된 다음날이라면서 2022. 1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

3. 결론

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지영

- 1) 알루미늄 소재로 된 창호를 의미한다.
- 2) 플라스틱 소재로 된 창호를 의미하며, 통상 PVC로 된 하이샷시를 칭한다.